

#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5. 26. 김종복의원 외 6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5. 31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6. 15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김종복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0조에 의거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- 이에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프로세스를 규정하고, ‘하자관리 지원시스템’의 구축·운영, 통계 관리 및 의회 보고 등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~제3조)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제6조)
- 시스템 구축·운영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~제8조)
- 통계 관리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~제10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읍·면·동·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5. 26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5. 31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6. 15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자치행정과 우정숙)

### 가. 제안이유

- 행정구역 조정(행정동 설치)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, 비봉공공주택지구(삼화리, 구포리 일원) 사업부지 경계조정을 위한 조례개정(화성시 조례 제1985호) 시 일부 누락된 지번을 추가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동탄7동 인구 증가 및 동탄9동 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동탄9동 설치(별표 2)
- 비봉공공주택지구 내 삼화리-구포리 간 경계조정 반영(별표 1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탄9동 신설 등 관할구역을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통·리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5. 26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5. 31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6. 15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자치행정과 우정숙)

### 가. 제안이유

-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, 조례상 통·리·반의 지번 오류(누락)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(통·리·반)을 효율적·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통·리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(별표 1)
  - 봉담읍 상13리(13개 반), 수영14리(10개 반), 동화14리(8개 반) 신설
  - 남양읍 신남10리(20개 반) 신설
  - 팔탄면 기천3리 2~4반 신설 및 관할구역 조정
  - 양감면 송산2리, 송산4리 관할구역 조정
  - 새솔동 3통, 10통 관할구역 조정, 14통(6개 반), 15통(6개 반), 16통(5개 반) 신설 및 6통, 11~13통 표기정정
  - 진안동 반정3통(14개 반), 반정4통(20개 반) 신설
  - 화산동 안녕15통(12개 반), 안녕16통(11개 반) 신설
  - 동탄5동 영천8통 관할구역 조정, 영천38통(2개 반) 신설 및 영천28통 4반 신설

○ 통·리장의 정수 증원(별표 2)

- 봉담읍 상리 통리장 정수 1명 및 수영리 통리장 정수 1명 및 동화리 통리장 정수 1명 증원
- 남양읍 신남리 통리장 정수 1명 증원
- 새솔동 새솔동 통리장 정수 3명 증원
- 진안동 반정동 통리장 정수 2명 증원
- 화산동 안녕동 통리장 정수 2명 증원
- 동탄5동 영천동 통리장 정수 1명 증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운정자)

-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5. 26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5. 31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6. 15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소통혁신담당관 오현문)

### 가. 제안이유

-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, 「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을 설치·운영해 왔으며,
- 2023년 5월 화성시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운영(면접심사) 결과 등을 통해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, 「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시의회 동의대상자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학력 및 주요경력	비고
1	현병선	61. 11. 5.	경기도 용인시	따로 붙임	임기2년 (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)
2	이강석	58. 12. 15.	경기도 수원시		
3	김영섭	60. 6. 2.	경기도 화성시		
4	박경아	67. 5. 22.	경기도 화성시		
5	양혜란	63. 2. 15.	경기도 화성시		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화성시 읍부즈만추천위원회 운영(면접심사) 결과 등을 통해 시민읍부즈만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 「화성시 시민읍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「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」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전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5. 26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5. 31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6. 15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정책기획과 유운호)

### 가. 보고사유

-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“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”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69조 및 동법 제175조에 따라 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사무총장직 삭제, 감사 신설(안 제5조~7조)
- 정기회의 개최 시기 변경: 분기별 1회 ⇨ 반기별 1회(안 제8조)
-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임명(안 제11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규약 내용을 정비·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보고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5. 26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5. 31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6. 15. 상정, 수정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정책기획과 유운호)

### 가. 제안이유

- 인구 100만 선진행정 도약을 위해 균형발전 및 미래먹거리 선점·육성 기능을 강화하고, 과밀부서의 업무 분담을 위해 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내용

- (5급) 과(課) 단위 개편

#### 1) 신 설 : 4과

본청(3)	1) 기획조정실 법무과 2) 자치행정국 재산관리과 3) 민생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
읍면동(1)	1) 동탄9동

#### 2) 폐 지 : 1과

본청(1)	1) 도시주택국 허가민원3과
-------	-----------------

#### 3) 명칭변경 : 2과

본청(2)	1) 미래비전담당관 ⇨ 균형발전담당관 2)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⇨ 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
-------	--

○ (6급) 팀 단위 개편

1) 신설 : 7팀

본청(4)	1) 예산재정과 교육복지예산 2) 기업지원과 창업벤처지원 3)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기획 4) 투자유치과 20조투자유치
읍면동(3)	1) 동탄9동 총무팀 2) 동탄9동 복지1 3) 동탄9동 복지2

2) 폐지 : 3팀

본청(3)	1) 미래비전담당관 전략SOC 2) 허가민원3과 공장설립3 3) 허가민원3과 농지산지3
-------	--

3) 이관 : 8팀

본청(8)	1) 정책기획과 의회협력 ⇨ 법무과 의회협력 2) 예산법무과 법제 ⇨ 법무과 법제 3) 예산법무과 송무 ⇨ 법무과 송무 4) 예산법무과 규제개혁 ⇨ 법무과 규제개혁 5) 회계과 재산관리 ⇨ 재산관리과 재산관리 6) 회계과 청사조성 ⇨ 재산관리과 청사조성 7) 회계과 청사관리 ⇨ 재산관리과 청사관리 8) 회계과 공용차량관리 ⇨ 재산관리과 공용차량관리
-------	--

4) 명칭변경·이관 : 2팀

본청(2)	1) 기업정책과 미래산업 ⇨ 투자유치과 미래산업유치 2) 허가민원3과 허가지원3 ⇨ 허가민원1과 개발행위2팀
-------	---

5) 명칭변경 : 16팀

본청[15]	1) 미래비전담당관 미래전략 ⇨ 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정책 2) 미래비전담당관 미래도시 ⇨ 균형발전담당관 전략사업 3) 미래비전담당관 정책혁신 ⇨ 균형발전담당관 지속가능발전 4) 예산법무과 예산총괄 ⇨ 예산재정과 기획행정에산 5) 예산법무과 경제문화예산 ⇨ 예산재정과 경제환경예산 6) 예산법무과 도시교통환경예산 ⇨ 예산재정과 도시건설예산 7)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⇨ 행정지원과 총무 8) 기업지원과 성장지원 ⇨ 기업지원과 기업통상지원 9) 기업지원과 기업육성 ⇨ 기업지원과 소부장제조지원 10) 중장년노인복지과 중장년노인정책 ⇨ 중장년노인복지과 노인정책 11) 중장년노인복지과 중장년지원 ⇨ 중장년노인복지과 중장년정책 12) 허가민원2과 개발행위2 ⇨ 허가민원2과 개발행위3 13) 허가민원2과 개발행위3 ⇨ 허가민원2과 개발행위4 14) 토지정보과 지적1 ⇨ 토지정보과 지적 15) 토지정보과 지적2 ⇨ 토지정보과 지적측량검사
사업소[1]	16) 맑은물시설과 맑은물관리 ⇨ 맑은물시설과 맑은물계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명칭변경 등 재배치를 통한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수정안 요지 : 수정동의 발의 - 박진섭 의원

- “예산법무과” 를 “예산재정과” 와 “법무과” 로 한다 관련 조항은, 법무과에 의회의 표시를 더함으로써 의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기하는 사항으로,

“예산법무과” 를 “예산재정과” 와 “의회법무과” 로 수정

※ 수정대비표 별첨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수정 대비표

[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]

수 정 전	수 정 후												
<p><b>2. 주요내용</b></p> <p>가. (5급) 과(課) 단위 개편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본청(3)</td> <td>1) 기획조정실 <b>법무과</b> 2) 자치행정국 <b>재산관리과</b> 3) 민생경제산업국 <b>투자유치과</b></td> </tr> <tr> <td>읍면동(1)</td> <td>1) <b>동탄9동</b></td> </tr> </table> <p>나. (6급) 팀 단위 개편</p> <p>3) 이 관 : 8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%;">본청(8)</td> <td>1) 정책기획과 의회협력 ⇨ <b>법무과</b> 의회협력 2) 예산법무과 법제 ⇨ <b>법무과</b> 법제 3) 예산법무과 송무 ⇨ <b>법무과</b> 송무 4) 예산법무과 규제개혁 ⇨ <b>법무과</b> 규제개혁 5) 회계과 재산관리 ⇨ <b>재산관리과</b> 재산관리 6) 회계과 청사조성 ⇨ <b>재산관리과</b> 청사조성 7) 회계과 청사관리 ⇨ <b>재산관리과</b> 청사관리 8) 회계과 공용차량관리 ⇨ <b>재산관리과</b> 공용차량관리</td> </tr> </table>	본청(3)	1) 기획조정실 <b>법무과</b> 2) 자치행정국 <b>재산관리과</b> 3) 민생경제산업국 <b>투자유치과</b>	읍면동(1)	1) <b>동탄9동</b>	본청(8)	1) 정책기획과 의회협력 ⇨ <b>법무과</b> 의회협력 2) 예산법무과 법제 ⇨ <b>법무과</b> 법제 3) 예산법무과 송무 ⇨ <b>법무과</b> 송무 4) 예산법무과 규제개혁 ⇨ <b>법무과</b> 규제개혁 5) 회계과 재산관리 ⇨ <b>재산관리과</b> 재산관리 6) 회계과 청사조성 ⇨ <b>재산관리과</b> 청사조성 7) 회계과 청사관리 ⇨ <b>재산관리과</b> 청사관리 8) 회계과 공용차량관리 ⇨ <b>재산관리과</b> 공용차량관리	<p>가. (5급) 과(課) 단위 개편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본청(3)</td> <td>1) 기획조정실 <b>의회법무과</b> 2) 자치행정국 <b>재산관리과</b> 3) 민생경제산업국 <b>투자유치과</b></td> </tr> <tr> <td>읍면동(1)</td> <td>1) <b>동탄9동</b></td> </tr> </table> <p>나. (6급) 팀 단위 개편</p> <p>3) 이 관 : 8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%;">본청(8)</td> <td>1) 정책기획과 의회협력 ⇨ <b>의회법무과</b> 의회협력 2) 예산법무과 법제 ⇨ <b>의회법무과</b> 법제 3) 예산법무과 송무 ⇨ <b>의회법무과</b> 송무 4) 예산법무과 규제개혁 ⇨ <b>의회법무과</b> 규제개혁 5) 회계과 재산관리 ⇨ <b>재산관리과</b> 재산관리 6) 회계과 청사조성 ⇨ <b>재산관리과</b> 청사조성 7) 회계과 청사관리 ⇨ <b>재산관리과</b> 청사관리 8) 회계과 공용차량관리 ⇨ <b>재산관리과</b> 공용차량관리</td> </tr> </table>	본청(3)	1) 기획조정실 <b>의회법무과</b> 2) 자치행정국 <b>재산관리과</b> 3) 민생경제산업국 <b>투자유치과</b>	읍면동(1)	1) <b>동탄9동</b>	본청(8)	1) 정책기획과 의회협력 ⇨ <b>의회법무과</b> 의회협력 2) 예산법무과 법제 ⇨ <b>의회법무과</b> 법제 3) 예산법무과 송무 ⇨ <b>의회법무과</b> 송무 4) 예산법무과 규제개혁 ⇨ <b>의회법무과</b> 규제개혁 5) 회계과 재산관리 ⇨ <b>재산관리과</b> 재산관리 6) 회계과 청사조성 ⇨ <b>재산관리과</b> 청사조성 7) 회계과 청사관리 ⇨ <b>재산관리과</b> 청사관리 8) 회계과 공용차량관리 ⇨ <b>재산관리과</b> 공용차량관리
본청(3)	1) 기획조정실 <b>법무과</b> 2) 자치행정국 <b>재산관리과</b> 3) 민생경제산업국 <b>투자유치과</b>												
읍면동(1)	1) <b>동탄9동</b>												
본청(8)	1) 정책기획과 의회협력 ⇨ <b>법무과</b> 의회협력 2) 예산법무과 법제 ⇨ <b>법무과</b> 법제 3) 예산법무과 송무 ⇨ <b>법무과</b> 송무 4) 예산법무과 규제개혁 ⇨ <b>법무과</b> 규제개혁 5) 회계과 재산관리 ⇨ <b>재산관리과</b> 재산관리 6) 회계과 청사조성 ⇨ <b>재산관리과</b> 청사조성 7) 회계과 청사관리 ⇨ <b>재산관리과</b> 청사관리 8) 회계과 공용차량관리 ⇨ <b>재산관리과</b> 공용차량관리												
본청(3)	1) 기획조정실 <b>의회법무과</b> 2) 자치행정국 <b>재산관리과</b> 3) 민생경제산업국 <b>투자유치과</b>												
읍면동(1)	1) <b>동탄9동</b>												
본청(8)	1) 정책기획과 의회협력 ⇨ <b>의회법무과</b> 의회협력 2) 예산법무과 법제 ⇨ <b>의회법무과</b> 법제 3) 예산법무과 송무 ⇨ <b>의회법무과</b> 송무 4) 예산법무과 규제개혁 ⇨ <b>의회법무과</b> 규제개혁 5) 회계과 재산관리 ⇨ <b>재산관리과</b> 재산관리 6) 회계과 청사조성 ⇨ <b>재산관리과</b> 청사조성 7) 회계과 청사관리 ⇨ <b>재산관리과</b> 청사관리 8) 회계과 공용차량관리 ⇨ <b>재산관리과</b> 공용차량관리												
<p><b>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b></p>													
<p>제4조의2제1항 중 “예산법무과” 를 “예산재정과·법무과” 로 한다.</p> <p><b>부 칙</b></p> <p>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화성시 고 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	<p>제4조의2제1항 중 “예산법무과” 를 “예산재정과·<b>의회법무과</b>” 로 한다.</p> <p>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화성시 고 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												

제8조 중 “예산법무과장” 을  
“법무과장” 으로 한다.

⑥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같  
은 조 제3항, 제3조제1항 및  
제4조제1항 단서 중  
“예산법무과장” 을  
각각 “법무과장” 으로 한다.

⑦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별표 2 중  
“회계과” 를 “재산관리과” 로 한다.  
별표 4 중 “예산법무과” 를  
각각 “예산재정과, 법무과” 로,  
“허가민원1·2·3과” 를  
각각 “허가민원1과, 허가민원2과” 로 한  
다.

제8조 중 “예산법무과장” 을  
“의회법무과장” 으로 한다.

⑥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같  
은 조 제3항, 제3조제1항 및  
제4조제1항 단서 중  
“예산법무과장” 을  
각각 “의회법무과장” 으로 한다.

⑦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별표 2 중  
“회계과” 를 “재산관리과” 로 한다.  
별표 4 중 “예산법무과” 를  
각각 “예산재정과, 의회법무과” 로,  
“허가민원1·2·3과” 를  
각각 “허가민원1과, 허가민원2과” 로  
한다.

별표 5 중 “총 13+ a+β+γ+δ명” 을  
 “총 14+ a+β+γ+δ명” 으로,  
 “1)재난상황총괄반(12+ a명)” 을  
 “1)재난상황총괄반(13+ a명)” 으로,  
 “다)행정지원팀(2명)” 을  
 “다) 행정지원팀(3명)” 으로,  
 “예산법무과(1명)” 를  
 “예산재정과(1명), 법무과(1명)” 로,  
 “세정과 예산법무과” 를  
 “세정과, 예산재정과, 법무과” 로,  
 “허가민원1·2·3과” 를  
 “허가민원1과, 허가민원2과” 로 한다.

별표 5 중 “총 13+ a+β+γ+δ명” 을  
 “총 14+ a+β+γ+δ명” 으로,  
 “1)재난상황총괄반(12+ a명)” 을  
 “1)재난상황총괄반(13+ a명)” 으로,  
 “다)행정지원팀(2명)” 을  
 “다) 행정지원팀(3명)” 으로,  
 “예산법무과(1명)” 를  
 “예산재정과(1명), **의회**법무과(1명)” 로,  
 “세정과 예산법무과” 를  
 “세정과, 예산재정과, **의회**법무과” 로,  
 “허가민원1·2·3과” 를  
 “허가민원1과, 허가민원2과” 로 한다.

**신·구조문대비표**

제4조의2(기획조정실) ① 기획조정  
 실에 정책기획과·예산법무과·  
 군공항대응과·사회적경제과·안  
 전정책과·스마트도시과·정보통  
 신과를 둔다.

제4조의2(기획조정실) ① -----  
 -----예산재정과·  
의회법무과-----  
 -----  
 -----.

#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5. 26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5. 31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6. 15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정책기획과 유운호)

### 가. 제안이유

- 인구 100만 선진행정 도약을 위한 균형발전 및 미래먹거리 선점·육성 기능을 강화하고, 동탄9동 개청 및 과밀부서의 업무 분담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내용

-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,837명에서 2,859명으로, 집행기관의 정원을 2,787명에서 2,809명으로 조정(안 제2조)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4조, 안 별표 3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, 정원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5. 26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5. 31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6. 15. 상정, **수정가결**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예산법무과 이택구)

### 가. 제안이유

-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, 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·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및 활용 기준 완화로 기금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개정(안 제11조제3항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기금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**수정가결**

7. 수정안 요지 : 수정동의 발의 - 오문섭 의원

- 제11조제4항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

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“100분의 50” 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 조항은,  
 향후 예측하지 못한 재정상황을 대비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 
 재정안정화기금을 탄력적 운영·활용하기 위해 사용 비율 한도를 늘리는  
 사항으로,

기금 적립금 총액의 “100분의 50” 에서 “100분의 70” 으로 수정.

※ 수정대비표 별첨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수정 대비표

[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]

수 정 전	수 정 후
신·구조문대비표 제11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④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1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④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5. 26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5. 31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6. 15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예산법무과 이택구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행정기본법」 제7조의2에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나이 규정에서 “만” 표시 삭제(안 제1조부터 제29조까지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행정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상위법령 신설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